

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



2025년 12월 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59 호

## 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④ 제3항의 저축기간은 연차발생일(예시: 2021년 1월 1일)을 기준으로 3년(예시: 2023년 12월 31일)으로 하며 최대 저축가능일수는 20일로 한다. 다만, 1년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장기휴직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저축가능일수는 30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 3 9 0 - 7 6 4 1 )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8조(연차유급휴가)</b>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3항의 저축기간은 연차 발생일(예시: 2021년 1월 1일)을 기준으로 3년(예시: 2023년 12월 31일)으로 하며 최대 저축가능일수는 20일로 한다.</p>	<p><b>제28조(연차유급휴가)</b>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1년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장기휴직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저축가능일수는 30일로 한다.</u></p>